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 개정(2001. 7. 31)되어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보전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동별, 법정동을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맞게 개정 (안 제4조 별표1)
- 나. 주민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현재 가축 사육이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추가 (안 제4조 별표1)
-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건강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안 제4조 제1항 제5호)

3. 참고사항

-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호
- 나.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 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2001. 7. 31)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기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보전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2001년 7월 31일 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맞게 행정구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가축사육이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을 보전키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 조례 제4조 제1항 제5호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예외 지역으로 공공체육 시설 내 승마장을 신설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 동법 제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전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된 공공체육시설 내의 승마장은 주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므로 예외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